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에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신규 국가산업단지의 신속한 조성
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중동지역에 대한 기업의 해외건설 수주
지원 확대에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 저상버스 등
특별교통수단 관련 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도심
형항공기의 형식증명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 등에 대한 규제특례 부여 여
부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지방항공
청에 신공항건설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과 드론
비행승인 업무에 필요한 인력 2명(7급 2명)을 각각 증원하며, 협업정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업으로 에너지 분야 등의
국가 주요 기반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
통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감축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청년세대의 소통 강화를 내실 있게 뒷받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에
두는 청년정책 전문인력을 ‘별정직공무원’에서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그 채용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청년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국토교통부의 청년정책 전문인력 1명(별정직 6급 상
당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
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4. 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
을 반영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청년정책담당관의 평가기간

을 2024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3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국토
교통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하여 운영하고 있는 정원 1명(7
급 1명)을 감축하며,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및 관할구역을 일부 조정하고, 효율적인 인
력 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지방국토관리청의 관리운영직
군 정원 14명(8급 2명, 9급 12명)을 기술직군 정원 12명(8급 2명, 9급 10
명)과 행정직군 정원 2명(9급 2명)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3. 8. ~ 3. 1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7항제21호를 제23호로 하고, 제21호 및 제2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중기 연계교통체계 구축 계획의 수립 및 주요 교통물류거점 간 연계교통체계 구축

22. 교통 분야 연구개발의 총괄·조정

같은 조 제8항제19호 중 “보행교통”을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따른 보행교통”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규칙에 관한 사항
같은 조 제11항제18호 및 제2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제6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매수토지 관리

제61조제4항을 삭제한다.

별표 1의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경부고속선(서울기점 59.795km~김천구미역 북쪽),
경부선(서정리역~영동역), 호남고속선(오송기점
67.5km 지점까지), 호남선(대전조차장~강경역), 장항
선(천안역~대천역 북쪽), 충북선(조치원~주덕역 서
쪽), 강경선, 대전선, 오송선, 부강화물선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 중 총계 “1,013”을 “1,018”로 하고, 별정직 계 “8”을 “7”로 하며, “청년정책 담당(6급 상당) 1”을 삭제하고, 일반직 계 “1,002”를 “1,008”로 하며,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25”를 “26”으로, 철도경찰사무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7”을 “8”로, 항공사무관 “16”을 “17”로, 철도경찰주사·행정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환경주사·항공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사서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10”을 “13”으로, “행정서기보 5” 다음에 “행정서기보 또는 방호서기보 1”을 신설하고, 철도경찰서기보·행정서기보·통계서기보·공업서기보·환경서기보·항공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방송통신서기보·사서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 “6”을 “5”로 한다.

별표 7의2 중 총계 “1,018”을 “1,022”로 하고, 별정직 계 “8”을 “7”로 하며, “청년정책 담당(6급 상당) 1”을 삭제하고, 일반직 계 “1,007”을 “1,012”로 하며,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25”를 “26”으로, 철도경찰사무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

는 방재안전사무관 “12”를 “13”으로, 항공사무관 “16”을 “17”로, 철도경찰주사·행정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환경주사·항공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사서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11”을 “14”로, 철도경찰주사보·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공업주사보·환경주사보·항공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사서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11”을 “10”으로, “행정서기보 5” 다음에 “행정서기보 또는 방호서기보 1”을 신설하고, 철도경찰서기보·행정서기보·통계서기보·공업서기보·환경서기보·항공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방송통신서기보·사서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 “6”을 “5”로 한다.

별표 9 중 행정주사 “41”을 “40”으로, “행정주사 또는 공업주사 11” 다음에 “행정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1”을 신설하고, 공업서기 “1”을 “3”으로, 기계운영서기 “24”를 “22”로, 행정서기보 “38”을 “41”로, 시설서기보 “36”을 “38”로, 방호서기보 “24”를 “23”으로, 공업서기보 “12”를 “20”으로, 토목운영서기보 “14”를 “12”로, 기계운영서기보 “37”을 “29”로, 사무운영서기보 “8”을 “6”으로 한다.

별표 9의2 중 행정주사 “38”을 “37”로, “행정주사 또는 공업주사 11” 다음에 “행정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1”을 신설하고, 공업서기 “1”을 “3”으로, 기계운영서기 “24”를 “22”로, 행정서기보 “38”을 “41”로, 시설서기보 “36”을 “38”로, 방호서기보 “24”를 “23”으로, 공업서기보 “12”를 “20”으로, 토목운영서기보 “14”를 “12”로, 기계운영서기보 “37”을 “29”로, 사무

운영서기보 “8”을 “6”으로 한다.

별표 12 중 총계 “608”을 “612”로 하고, 일반직 계 “608”을 “612”로 하며, 시설주사 “11”을 “13”으로, 행정주사보·항공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7”을 “9”로 한다.

별표 12의2 중 총계 “608”을 “612”로 하고, 일반직 계 “608”을 “612”로 하며, 시설주사 “11”을 “13”으로, 행정주사보·항공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6”을 “8”로 한다.

별표 19 제1호 중 1)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의 평가기간 란에 “2024년 3월 31일까지”를 “2026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별표 20 제4호를 삭제한다.

국토교통부령 제588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국토교통부령 제801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국토교통부령 제1179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제47조제1항 관련)

소속	명칭	위치	관할구역
철도 특별 사법 경찰대	서울지방철도 특별사법 경찰대	서울특별시 중구	경부고속선(시흥연결선~서울기점 59.795km 지점), 경부선(서울역~서정리역 북쪽), 중앙선(청량리역~양수역 서쪽), 경인선, 용산선, 경춘선, 경원선, 경의선, 교외선, 망우선, 안산선, 남부화물기지선, 과천선, 분당선, 일산선, 인천국제공항선, 신분당선, 수인선, 문산기지선, 병점기지선, 평내기지선, 경강선(판교역~여주역), 수서평택고속선, 서해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부산지방철도 특별사법 경찰대	부산광역시 동구	경부고속선(김천구미역~부산역), 경부선(영동역 남쪽~부산역), 중앙선(우보역 남쪽), 경전선(북천역 동쪽), 진해선, 대구선, 우암선, 부전선, 장생포선, 울산항선, 괴동선, 온산선, 가야선, 양산화물선, 건천연결선, 동해선, 덕산선, 부산신항선, 신항북선, 신항남선, 경북선(김천역~어등역), 문경선, 신동화물선
	광주지방철도 특별사법 경찰대	광주광역시 광산구	호남고속선(오송기점 67.5km 지점 남쪽), 호남선(강경역 남쪽), 경전선(광주송정역~북천역), 장항선(대천역~익산역), 북송정분기~북송정역, 진라선, 군산화물선, 옥구선, 광주선, 여천선, 북전주선, 광양제철선, 대불선, 장성화물선, 광양항선, 신광양항선, 전경삼각선
	제천지방철도 특별사법 경찰대	충청북도 제천시	중앙선(양수역~우보역), 충북선(봉양역~주덕역), 경북선(어등역 동쪽), 정선선, 삼척선, 영동선, 태백선, 묵호항선, 북평선, 함백선, 경강선(원주역~강릉역), 용문기지선, 중부내륙선(부발역 남쪽~충주역)

현행	개정안
제11조(교통물류실) ① ~ ⑥ (생략) ⑦ 교통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0. (생략) 21. 그 밖에 교통물류실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2. 삭제 23. 삭제 24. ~ 26. 삭제 ⑧ 교통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4. (생략) 15. ~ 17. 삭제 18. (생략) 19. 보행교통에 관한 기본방침·시책의 수립·추진, 지표조사 및 보행교통의 개선에 관한 사항 20. ~ 24. 삭제	제11조(교통물류실)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 1. ~ 20. (현행과 같음) 21. 중기 연계교통체계 구축 계획의 수립 및 주요 교통물류거점 간 연계교통체계 구축 22. 교통 분야 연구개발의 총괄·조정 23. 그 밖에 교통물류실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⑧ ----- -----. 1. ~ 14. (현행과 같음) 18. (현행과 같음) 19.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따른 보행교통----- ----- -----

25. (생 략) <u><신 설></u> ⑨ (생 략) ⑩ 삭제 ⑪ 생활교통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7. (생 략) 18. <u>중기 연계교통체계 구축 계획의 수립 및 주요 교통물류 거점 간 연계교통체계 구축</u> 19. ~ 25. (생 략) 26. <u>교통 분야 연구개발의 총괄·조정</u> ⑫ ~ ⑭ (생 략) ⑮ ~ ⑰ 삭제 ⑱ (생 략) 제18조(지역협력국) ① ~ ⑤ (생 략) ⑥ 보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5. (생 략) <u><신 설></u> 제61조(한시정원) ① ~ ③ (생 략)	25. (현행과 같음) 26. <u>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 구역의 지정 및 관리 규칙에 관한 사항</u> ⑨ (현행과 같음) ⑪ ----- -----. 1. ~ 17. (현행과 같음) <u><삭 제></u> 19. ~ 25. (현행과 같음) <u><삭 제></u> ⑫ ~ ⑭ (현행과 같음) ⑱ (현행과 같음) 제18조(지역협력국)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1. ~ 5. (현행과 같음) 6. <u>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매수토지 관리</u> 제61조(한시정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에너지 분야 등의 국가 주요 기반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2월 29일까지 별표 20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토교통부에 두며, 별표 20의 정원 1명(철도경찰사무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명)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u> ⑤ (생 략) 국토교통부령 제588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국토교통부령 제801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국토교통부령 제1179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u><삭 제></u> ⑤ (현행과 같음) 국토교통부령 제588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국토교통부령 제801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국토교통부령 제1179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	--	---	---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간) 종전의 국토교통부령 제520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에 따른 정원(철도경찰주사보·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공업주사보·환경주사보·항공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사서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8명) 중 제5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원 1명(철도경찰주사보·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공업주사보·환경주사보·항공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사서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1명)은 2024년 1월 20일까지 존속한다.

<삭 제>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7]

국토교통부 공무원 정원표(제56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1,013</u>	<u>1,018</u>	+5
·	·	·	
·	·	·	
별정직 계	<u>8</u>	<u>7</u>	-1
·	·	·	
·	·	·	
청년정책 담당(6급 상당)	<u>1</u>	<삭 제>	-1
·	·	·	
·	·	·	
일반직 계	<u>1,002</u>	<u>1,008</u>	+6
·	·	·	
·	·	·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시설사무관	<u>25</u>	<u>26</u>	+1
·	·	·	
·	·	·	
철도경찰사무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방 재안전사무관	<u>7</u>	<u>8</u>	+1
·	·	·	
·	·	·	
항공사무관	<u>16</u>	<u>17</u>	+1
·	·	·	
·	·	·	
철도경찰주사 · 행정주사 · 통 계주사 · 공업주사 · 환경주 사 · 항공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사 · 방송통신주사 · 사서주사 또는 방재안전주 사	<u>10</u>	<u>13</u>	+3
·	·	·	
·	·	·	
행정서기보	5		
행정서기보 또는 방호서기보	<신 설>	<u>1</u>	+1
철도경찰서기보 · 행정서기보 · 통계서기보 · 공업서기보 · 환경서기보 · 항공서기보 · 시설서기보 · 전산서기보 · 방송통신서기보 · 사서서	<u>6</u>	<u>5</u>	-1

기보 또는 운전서기보			
·	·	·	
·	·	·	

[별표 7의2]

국토교통부 공무원 정원표(제56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018</u>	<u>1,022</u>	+4
·	·	·	
·	·	·	
별정직 계	<u>8</u>	<u>7</u>	-1
·	·	·	
·	·	·	
청년정책 담당(6급 상당)	<u>1</u>	<삭 제>	-1
·	·	·	
·	·	·	
일반직 계	<u>1,007</u>	<u>1,012</u>	+5
·	·	·	
·	·	·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시설사무관	<u>25</u>	<u>26</u>	+1
·	·	·	
·	·	·	
철도경찰사무관 · 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공업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u>12</u>	<u>13</u>	+1
·	·	·	
·	·	·	
항공사무관	<u>16</u>	<u>17</u>	+1
·	·	·	
·	·	·	
철도경찰주사 · 행정주사 · 통계주사 · 공업주사 · 환경주사 · 항공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사 · 방송통신주사 · 사서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u>11</u>	<u>14</u>	+3
·	·	·	
·	·	·	
철도경찰주사보 · 행정주사보			
· 통계주사보 · 공업주사보			
· 환경주사보 · 항공주사보	<u>11</u>	<u>10</u>	-1
· 시설주사보 · 전산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 사서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	·	·	
·	·	·	

행정서기보	5		
<u>행정서기보 또는 방호서기보</u>	<u><신 설></u>	<u>1</u>	+1
철도경찰서기보 · 행정서기보 · 통계서기보 · 공업서기보 · 환경서기보 · 항공서기보 · 시설서기보 · 전산서기보 · 방송통신서기보 · 사서서 기보 또는 운전서기보 · ·	<u>6</u> · ·	<u>5</u> · ·	-1

[별표 9]

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 정원표(제57조제2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행정주사	<u>41</u>	<u>40</u>	-1
·	·	·	
행정주사 또는 공업주사	11		
<u>행정주사 또는 학예연구사</u>	<u><신 설></u>	<u>1</u>	+1
·	·	·	
·	·	·	
공업서기	<u>1</u>	<u>3</u>	+2
·	·	·	
·	·	·	
기계운영서기	<u>24</u>	<u>22</u>	-2
행정서기보	<u>38</u>	<u>41</u>	+3
·	·	·	
시설서기보	<u>36</u>	<u>38</u>	+2
·	·	·	
·	·	·	
방호서기보	<u>24</u>	<u>23</u>	-1
공업서기보	<u>12</u>	<u>20</u>	+8

·	·	·	
·	·	·	
토목운영서기보	<u>14</u>	<u>12</u>	-2
·	·	·	
기계운영서기보	<u>37</u>	<u>29</u>	-8
·	·	·	
사무운영서기보	<u>8</u>	<u>6</u>	-2

[별표 9의2]

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 정원표(제57조제2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행정주사	<u>38</u>	<u>37</u>	-1
·	·	·	
행정주사 또는 공업주사	11		
<u>행정주사 또는 학예연구사</u>	<u><신 설></u>	<u>1</u>	+1
·	·	·	
·	·	·	
공업서기	<u>1</u>	<u>3</u>	+2
·	·	·	
·	·	·	
기계운영서기	<u>24</u>	<u>22</u>	-2
행정서기보	<u>38</u>	<u>41</u>	+3
·	·	·	
시설서기보	<u>36</u>	<u>38</u>	+2
·	·	·	
·	·	·	
방호서기보	<u>24</u>	<u>23</u>	-1
공업서기보	<u>12</u>	<u>20</u>	+8

·	·	·	
·	·	·	
토목운영서기보	<u>14</u>	<u>12</u>	-2
·	·	·	
기계운영서기보	<u>37</u>	<u>29</u>	-8
·	·	·	
사무운영서기보	<u>8</u>	<u>6</u>	-2

[별표 12]

지방항공청 공무원 정원표(제57조제5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608</u>	<u>612</u>	+4
일반직 계	<u>608</u>	<u>612</u>	+4
·	·	·	
·	·	·	
시설주사	<u>11</u>	<u>13</u>	+2
·	·	·	
·	·	·	
행정주사보·항공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u>7</u>	<u>9</u>	+2
·	·	·	
·	·	·	

[별표 12의2]

지방항공청 공무원 정원표(제57조제5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608	612	+4
일반직 계	608	612	+4
·	·	·	
·	·	·	
시설주사	11	13	+2
·	·	·	
·	·	·	
행정주사보·항공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6	8	+2
·	·	·	
·	·	·	